
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으로

경력과 전문성을 갖춘
신중년을 고용하세요

나,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
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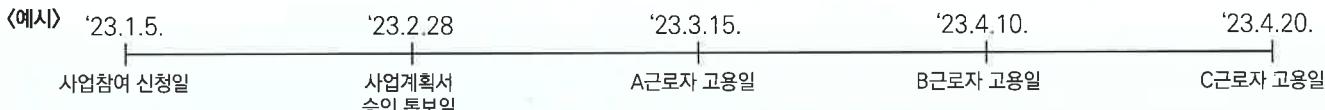


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

지원요건

- ① 지원대상 직무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장의 재정상태, 근로자 이직률, 근로조건, 고용확대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우량한 기업에 지원하므로 사업신청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.
- ② 사업승인 후 고용한 근로자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, 사업참여 접수일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.
- ③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해야 합니다.
※ 단, 고용하고자 하는 직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(뒷면 참조)
- ④ 고용 이후 만 5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.

※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(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)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보다 초과해야 합니다.



▲ '22.7월~12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명이고, '23.3월~8월 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5.3명인 경우 A, B, C 근로자 모두 지급 대상으로 인정

-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나, 아래의 경우는 지원됩니다.

- ▶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- ▶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- ▶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▶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지원내용

지원금액

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
종견기업 월 40만원
※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

지원인원 한도

직전 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(최대 30명 한도, 10인 미만인 경우 3명)

지급주기 및 기간

6개월 단위로 1년간
※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,
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

지원절차

사업참여 신청서
(계획서 포함) 제출
(사업주→고용센터)
<매월 말 마감>

사업계획서
심사 및 승인
(고용센터)
<익월 중·하순경>

심사결과 통보
(고용센터→사업주)
<익월 말까지>

신중년 고용 및
6개월간 고용유지
(사업주)

장려금 지급신청서
제출
(사업주→고용센터)
<6개월 단위>

지원요건 충족 시
장려금 지급
(고용센터)

신청방법

직접제출

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온라인 신청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→ 로그인 → 기업회원서비스 → 고용창출장려금
→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에서 신청합니다.

※ 신청서류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– 정책자료 – 정책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